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. 8. 20 선고 2015가단121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(변경전 성명: E)

4. F

5. G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8. 20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논산시 H 전 1,844m² 중,
가. 피고 B는 3/11 지분에 관하여,
나. 피고 C, D, F, G은 각 2/11 지분에 관하여
각 2011. 10. 1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 위 적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예 비 적 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는 8,181,820원, 피고 C, D, F, G은 각 5,454,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강지웅

별지